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I. 회부안건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II. 경 과

1. 제 출

가. 제출일자 : 2001년 6월 9일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다. 의안번호 : 885

2. 회 부

가. 회부년월일 : 2001년 6월 11일

나. 회부 근거 : 의사 13130-746

3. 상 정

가. 상정년월일 : 2001년 6월 26일

나. 제20회 정례회 제3차 건설위원회 상정

III. 제안설명 요지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정한 동 조례는 지난 89년 12월 28일 제정된 이래 관계법령 등의 개정 따라 그 동안 9차에 걸친 부분개정으로 인해 조문 및 구성체계가 일목요연하지 않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전문 개정하여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심의·자문하는 사항중 다음의 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함.

(1) 심의하는 사항중 다음의 사항을 추가함
(안 제3조제1항)

(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사시행의 환경성에 관한 사항

(나)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자문하는 사항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함
(안 제3조제2항)

(가) 현행 : 건설안전관리본부·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개정 : 상수도사업본부·건설안전관리본부·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나. 심의 및 자문소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을 규정함(안 제5조)

(1) 위원회는 심의·자문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 설계적격심의소위원회

·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2) 소위원회 위원장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으로 정하도록 하되,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안전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할 소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임하거나 호선하게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3) 소위원회는 5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안전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5항)

다.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개최전에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제척하도록 함(안 제6조)

(1)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행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라.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대안입찰공사 설계적격심 의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신설함(안 별표)

(다음 페이지에 계속)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의 심의사항		800,000원	800,000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21조제5항의 심의사항	입찰안내서 심의	800,000원	800,000원	
	일괄입찰공사 기본설계심의 또는 대안입찰공사 설계적격심의(신설)	2개업체 응찰시	3,000,000원	4,000,000원
		3개업체부터 4개업체 응찰시	4,500,000원	6,000,000원
		5개업체부터 6개업체 응찰시	6,000,000원	8,000,000원
		7개이상 업체 응찰시	7,500,000원	10,000,000원
		기타 심의사항	800,000원	800,000원
기타 심의사항		800,000원	800,000원	

<p>3. 참고사항</p> <p>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p> <p>나. 기 타</p> <p>(1) 입법예고(2001. 4. 30 ~ 5. 20)결과 의 건 없음.</p> <p>(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규제사무 없음.</p> <p>IV.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p> <p>1.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89. 12. 18 조례제정 이후 9차례에 걸친 부분개정으로 흐트러진 조문 구성체계 등을 일목요연하게 재정리하고 ○ 위원회 심의 및 자문대상의 확대 등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p>2.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제1조(목적)의 내용중에 본 위원회의 설치근거 규정으로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 추가한 것은 그 동안 본위원회가 사실상 수행하여 온 설계자문기능의 근거를 명확히하고자 한 것이며 ○ 안 제3조(기능)제1항 각호에서 환경성과 신기술·공법 사용에 따른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의의사항 제기의 건을 심의 검토항목 및 대상으로 추가하고 같은 조 	<p>제2항 제2호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시행 건설공사에 대한 자문기능을 추가한 것은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기능을 강화·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안 제5조(소위원회)에서 종래 조문을 달리하고 있던 심의 및 자문소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원화하고 위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던 소위원회 구성을 안건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기술심사 담당관이 획일적으로 맡아오던 소위원회 위원장을 소위원회별 특성과 안건의 성질에 따라 시 또는 시소속 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달리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 구성인원을 다양한 검토대상 분야별로 심사위원의 확대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대단위공사 적격심사 경우 등을 고려하여 영 제12조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인원과 일치시켜 '5인 이상 15인이내'를 '5인 이상 30인이내'로 각각 규정한 것은 소위원회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리고 안 제6조(위원의 회피 및 제척)에서 위원회심의 및 자문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회의참여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합니다. ○ 안 제7조(심의 자문요청 등) 및 제8조(처리기간 및 결과통보)에서 안전별 특수성과
--	--

일부 적용법규의 상이함 등에 따라 획일적 규정이 어려운 세부심의 및 자문신청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영 제13조에 의한 중앙위원회 운영규정 등을 고려하여 안전별 심의 및 자문요청 구분과 부의안건의 처리기간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탄력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 제10조(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에서 종래 위원장이 사안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심의 및 자문사항 사후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사후평가단 구성과 운영의 일관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별표에서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을 일부 보완 조정한 것은 대안입찰 및 설계직계 건설기술심에 대한 수수료 정수근거를 마련하고, 일괄 입찰공사 등에 대한 심의수수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성있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종합의견입니다.

○ 지난 '89년 조례제정 이후 수차례에 걸쳐 부분개정된 본 조례의 구성체계를 일관성있게 재정리하고, 심의 및 자문소위원회 구성과 운영규정을 일원화하였으며, 그 구성인원을 현실성있게 확대 조정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을 안전의 성질 등에 따라 달리 선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위원회 회피 및 제척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을 현실성있게 조정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심의 및 자문대상 안전별 특수성과 일부적용 법규의 상이함 등으로 획일적 규정이 어려운 업무여건을 고려하여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을 규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안전별 심의 및 자문요청 구분과 심의기간 및 심의절차 등의 규정에 대하여는 제도운영상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규칙마련 등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공사 및 건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의 기술심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2인 이내로 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4급이상 공무원
2. 건설공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환경성에 관한 사항
2. 영 제21조제5항제1호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